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1호 2020. 3. 6(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0-4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4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2020-50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 7
- 남원시 공고 제2020-519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 남원시 공고 제2020-522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6
- 남원시 공고 제2020-504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0 - 4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6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산31-55
 - 나. 사 업 량 : 3,411m²
 - 다. 사업기간 : 2020. 03. 31. ~ 2021. 02. 28.
 -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부*구 경*로 8**번길 3*, 나동 1**호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0-4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시행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3월 6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동충동	도로	소로	2-208	동충동 54-5 ~ 동충동 23-5	L=294m B=4~6m	2019. 12	남원시		
				2-209	동충동 52-23 ~ 동충동 46-3		2021. 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74)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서영환내과 옆 도로 개설공사

□ 토지조사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소재지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1	동충	45-6	45-6	도	196	1		국 (기획재정 부)				
2	"	45-2	45-16	대	13	2	남원시 송동면	김*규				
3	"	45-5	45-17	대	146	1	남원시 송동면	김*규				
4	"	45-12	45-12	도	23	23	남원시 송동면	김*규				
5	"	45-10	45-20	대	142	30		남원시				
6	"	45-9	45-19	대	129	34		남원시				
7	"	45-8	45-21	대	119	1		남원시				
8	"	45-1	45-22	대	145	5	남원시 동충동	이*덕				
9	"	473	473	도	606	306		건설부				
10	"	474	474	도	221	22		기획재정 부				
11	"	474-4	474-4	도	32	15		기획재정 부				
12	"	40-2	40-5	대	172	133		남원시				
13	"	40-1	40-4	대	63	28		남원시				
14	"	472	472	구	468	52		국(농림축 산식품부)				
15	"	23-19	23-30	대	99	10		남원시				
16	"	23-6	23-29	대	177	1	남원시 동충동	장*동				
17	"	23-5	23-28	대	90	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양*식				
18	"	54-3	54-17	대	248	24		남원시				
19	"	54-15	54-18	대	36	4	남원시 충청로	김*기				
20	"	54-16	54-16	도	25	25		남원시				
21	"	53-6	53-9	전	721	45		남원시				
22	"	53-1	53-7	중	939	156		남원시				
23	동충	46-3	46-10	대	274	107		남원시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소재지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24	"	46-7	46-13	도	35	6		남원시				
25	"	46-5	46-12	대	296	32		남원시				
26	"	48-13	48-17	대	13	2	남원시 동충동	오*근 외1인				
27	"	48-4	48-16	대	265	49		남원시				
28	"	49-21	49-23	대	70	8		남원시				
29	"	49-3	49-22	대	96	14		남원시				
30	"	49	49	도	172	7	금리	손*조				
31	"	22-7	22-7	도	26	17		남원시				
32	"	22-8	22-19	도	22	13		남원시				
33	"	22-2	22-18	대	164	1		남원시				
34	"	22-12	22-20	대	76	2		남원시				
35	"	46-4	46-11	전	245	40		남원시				
36	"	47	47-1	대	413	8		남원시				
37	"	50-3	50-6	대	278	46		남원시				
38	"	50-2	50-5	대	331	5	남원시 송동면 연산리	김*남				
39	"	52-23	52-44	대	325	55		남원시				
40	"	52-11	52-43	대	355	9		남원시				
		총계			8,266	1,343						

□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 리 명 세	성 명	주 소	
22	남원시 동충동	472, 40-3	주택	연와조 스라브지붕(지하 포함)	70.32㎡	남원시 도 랑길	김*생				
			창고		4.0㎡						
			화장실	조적조 스라브지붕	1.8㎡						
			창고	조적조 스레트지붕	6.3㎡						
			창고(2층)	판넬조 판넬지붕	14.4㎡						
			까데기	경량철골 강판지붕	4.0㎡						
			차양	PC지붕	19.2㎡						
			바닥포장		45.0㎡						
			계단		1식						
			수도간		1식						
			장독대		1식						
			창고	조적조 스라브 지붕	2.1㎡						
			화장실	판넬조 판넬지붕	5.8㎡						
			까데기	판넬지붕	9.0㎡						
			대문		1식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	3.24㎡						
			감나무		1주						
			17건								
24	남원시 동충동	23-5	주택	목조 강판지붕	67.7㎡	전주시 완 산구	양*창				
			방 및 창고	목조 강판지붕	14.4㎡						
			까데기		3.08㎡						
			바닥포장		24.0㎡						
			수도간		1식						
			대문		1식						
			담장	전면	8.0m						
			담장	후면	9.0m						
			장독대		1식						
			화단		1식						
			감나무		1주						
			장미		1주						
			12건								

의견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남원시장(도시과)
	주소	남원시 시청로 60, 3층

이의신청대상 토지	
--------------	--

의견내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남원시 공고 제2020 - 50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

남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인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3월 6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월락동 24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251,442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교육체육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 토지 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면 적(m ²)				소 유 자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5,882	219,927	증)31,515	251,442		
1	남원	고죽	168-2	체	704	704	-	704	남원시	
2	남원	월락	228	도	26	26	-	26	남원시	
3	남원	월락	229	체	153	153	-	153	국(건설부)	
4	남원	월락	230	체	245	245	-	245	국(건설부)	
5	남원	월락	230-1	도	113	113	-	113	국(건설부)	
6	남원	월락	231-8	도	12	12	-	12	국(건설부)	
7	남원	월락	231-9	도	13	13	-	13	국(건설부) 외 1인	
8	남원	월락	233-2	도	188	8	-	8	국(건설부)	
9	남원	월락	248	체	139,656	139,691	-	139,691	남원시	
10	남원	월락	251	체	15,163	15,163	-	15,163	남원시	
11	남원	월락	252-6	대	133	133	-	133	전라북도 남원**월	고*동 200
12	남원	월락	252-7	대	571	571	-	571	남원시	
13	남원	월락	271	전	255	255	-	255	성*영	남원읍 월*리 4
14	남원	월락	272	전	769	769	-	769	남원시	
15	남원	월락	273-1	전	365	365	-	365	남원시	
16	남원	월락	273-3	전	357	357	-	357	남원시	
17	남원	월락	273-10	도	2,149	-	증)1,950	1,950	국(건설부)	
18	남원	월락	274	전	1,260	1,260	-	1,260	남원시	
19	남원	월락	275	전	40	40	-	40	남원시	
20	남원	월락	276	전	177	177	-	177	남원시	

구분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 정	변 경	변경후		
21	남원	월락	281	전	1,607	1,607	-	1,607	남원시	
22	남원	월락	282	전	2,651	2,651	-	2,651	정*권	남원군 사*면 오*리 623
23	남원	월락	283	전	790	790	-	790	이*용	전라북도 남원시 주*면 상*동길 65-6
24	남원	월락	284	대	749	749	-	749	최*숙	도*동 1*3 우*아파트 101-1109
25	남원	월락	284-1	대	223	223	-	223	남원시	
26	남원	월락	285	대	393	393	-	393	김*순	전라북도 남원시 월**길 *0(월락동)
27	남원	월락	286	대	149	149	-	149	국(기획재정부)	
28	남원	월락	287	대	509	509	-	509	손*임 외 4인	전라북도 남원시 월**길 *0(월락동)
29	남원	월락	288	답	1,501	1,500	-	1,500	우*옥	전라북도 남원시 월*동 5*2-2
30	남원	월락	289-1	답	175	175	-	175	남원시	
31	남원	월락	289-2	답	284	284	-	284	남원시	
32	남원	월락	289-3	답	119	119	-	119	남원시	
33	남원	월락	289-4	답	1,369	1,369	-	1,369	남원시	
34	남원	월락	290	답	245	245	-	245	이*용	전라북도 남원시 주*면 상**길 6*-6
35	남원	월락	291	대	1,018	1,018	-	1,018	남원시	
36	남원	월락	292-1	임	258	258	-	258	이*용	전라북도 남원시 주*면 상**길 65-6
37	남원	월락	292-2	답	1,048	1,048	-	1,048	이*섭	도*동 1*7-25
38	남원	월락	292-3	답	1,147	1,147	-	1,147	이*섭	도*동 1*7-25
39	남원	월락	292-4	전	331	331	-	331	남원시	
40	남원	월락	293	답	1,994	1,994	-	1,994	남원시	
41	남원	월락	294	전	1,531	1,531	-	1,531	남원시	
42	남원	월락	295-1	임	2,147	2,147	-	2,147	남원시	
43	남원	월락	295-8	임	1,432	-	증)1,432	1,432	남원시외1인	
44	남원	월락	296	전	360	360	-	360	남원시	
45	남원	월락	297-1	유	588	588	-	588	박*곡	광*리 5*2

구분	토지소재지				면 적(m ²)				소 유 자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 정	변 경	변경후		
46	남원	월락	297-2	전	489	489	-	489	우*제	경기도 용인시 기*구 마*동 5*4-8 연*마을 삼**산아파트 1*3-1002
47	남원	월락	297-3	답	479	479	-	479	우*제	경기도 용인시 기*구 마*동 5*4-8 연*마을 삼**산아파트 1*3-1002
48	남원	월락	298-1	답	1,031	1,031	-	1,031	남원시	
49	남원	월락	298-2	유	902	902	-	902	남원시	
50	남원	월락	298-4	유	179	179	-	179	남원시	
51	남원	월락	299-1	답	879	879	-	879	남원시	
52	남원	월락	300	답	321	321	-	321	남원시	
53	남원	월락	301	도	3,946	-	증)3,946	3,946	국(건설부)	
54	남원	월락	302	전	428	428	-	428	남원시	
55	남원	월락	303-1	도	9,399	-	증)8,574	8,574	국(건설부)	
56	남원	월락	366	답	997	997	-	997	남원시	
57	남원	월락	367-2	답	470	470	-	470	남원시	
58	남원	월락	368-1	답	1,117	1,117	-	1,117	남원시	
59	남원	월락	369-1	대	615	615	-	615	남원시	
60	남원	월락	622-45	구	373	373	-	373	국(농림축산식품부)	
61	남원	월락	622-47	체	187	187	-	187	남원시	
62	남원	월락	622-57	구	238	28	감)28	-	국(농수산부)	
63	남원	월락	622-100	도	792	-	증)764	764	국(건설교통부)	
64	남원	월락	628-15	도	553	553	-	553	국(건설부)	
65	남원	월락	산39-2	임	2,479	2,479	-	2,479	남원시	

구분	토지소재지				면 적(m ²)				소 유 자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기 정	변 경	변경후		
66	남원	월락	산39-5	도	3,567	-	증)2,810	2,810	국(건설부)	
67	남원	월락	산44-2	임	3,033	3,033	-	3,033	남원시	
68	남원	월락	산44-8	임	253	253	-	253	남원시	
69	남원	월락	산45	임	127	104	감)104	-	협**씨완과	고*동 2*1
70	남원	월락	산57	임	17,637	17,637	-	17,637	남원시	
71	남원	월락	산57-2	임	630	630	-	630	남원시	
72	남원	월락	산57-3	임	859	281	-	281	남원시	
73	남원	월락	산58-2	임	2,531	2,531	-	2,531	남원시	
74	남원	월락	산59-2	임	1,084	1,084	-	1,084	남원시 외 4인	
75	남원	월락	산61-21	도	13,713	-	증)12,171	12,171	국(건설부)	
76	남원	월락	산63-2	임	1,607	1,607	-	1,607	남원시	

<편입 지장물 조서>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월락	282	이팝나무	일괄	2,600	m ²	남원시 사*면 오*리 6*3	정*권
			벚나무		50	주		
2	월락	283	매실나무	일괄	1	주	남원시 주*면 상**길 6*-6	이*용
			두릅		108	m ²		
3	월락	284	창고	조립식 판넬지붕	87.58	m ²	남원시 용*로 2*1-42, 우성@1*1/1*09	최*숙
			동산이전 비		1	식		
			창고 및 화장실	일괄(브릭 스레트지붕)	17.5	m ²		
			주택	일괄(브릭 스레트지붕)	45.36	m ²		
			까데기	일괄	14.28	m ²		

			관정	전기시설 포함	1	식		
			담장		42	m		
			대문		1	식		
			소나무	일괄	3	주		
			무궁화나무		1	주		
			사철나무		1	주		
			가죽나무		1	주		
			담장		20	m		
4	월락	285	주택	목조 강판지붕	34	m ²	남원시 월**길 50	김*순
			창고	브릭 스테트지붕	28	m ²		
			창고	브릭 스테트지붕	28	m ²		
			창고 및 화장실	일괄(브릭 스테트지붕)	12	m ²		
			비닐하우스	일괄(건조대 포함)	24	m ²		
			관정	전기시설 포함	1	식		
			바닥포장		150	m ²		
			감나무	일괄	20	주		
			살구나무		1	주		
			사과나무		5	주		
			대추나무		2	주		
			매실		3	주		
			가시오가피		5	주		
			블루베리		5	주		
			장독대		1	식		
			철쭉	일괄	1	주		
			골담초		1	주		
			화살나무		1	주		
밤나무	1	주						
5	월락	287	주택(정화조 포함)	브릭 스테트지붕	77.00	m ²	남원시 월**길 4*	손*임
			창고	브릭 스테트지붕	16.50	m ²		

			계사	브릭 스레트지붕	12.60	m ²		
			까대기	일괄	4.80	m ²		
			하우스까 데기	일괄	15.00	m ²		
			창고	브릭 스레트지붕	6.38	m ²		
			보일러실		1	식		
			창고	일괄(목조 기와지붕)	72.00	m ²		
			까대기	일괄(목조 기와지붕)	20.00	m ²		
			표고목	일괄	4	식		
			관정	전기시설 포함	1	식		
			수도간		1	식		
			바닥포장		30.00	m ²		
			화단	일괄	3	식		
			밤나무		1	주		
			가시오가 피		1	주		
			취퐁나무		1	주		
			복숭아나 무		1	주		
			마로니에		1	주		
			고로쇠		1	주		
			백일홍		1	주		
			자두나무		2	주		
			사과나무		5	주		
			장미		1	주		
			철쭉		35	주		
			함박꽃		1	주		
			6		월락	287		
			매실나무		5	주		
			남천		5	주		
			엄나무		1	주		
			피라칸타	1	주			
			젠피나무	1	주			
			은행나무	1	주			
			북분자	2	주			

			느티나무		1	주		
			포도나무		3	주		
			감나무		16	주		
			보리수		2	주		
			호두나무		1	주		
			석류나무		3	주		
			블루베리		9	주		
			화살나무		2	주		
			회양목		1	주		
			천리향		4	주		
			무궁화		1	주		
			사철나무		1	주		
			대추나무		4	주		
			산수유		3	주		
			두릅		2	주		
			오미자		10	주		
			소나무		2	주		
7	월락	287	담장	일괄	10	m	남원시 월**길 4*	손*임
			매실나무		2	주		
			철쭉		5	주		
			감나무		1	주		
8	월락	288	관정	일괄 (전기시설 포함)	3	식	남원시 천**길 6*-36	우*옥
			포장	일괄	10.95	m ²		
9	월락	292-2	느티나무	일괄	340	주	남원시 시**로 3*	이*섭
			은행나무		3	주		
			복숭아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탱자나무		1	주		
			감나무		1	주		
			창고		24	m ²		
			동산이전비		1	식		
			컨테이너		1	식		
			철울타리		1	식		
10	월락	292-3	느티나무	일괄	470	주	남원시 시**로 3*	이*섭
11	월락	297-3	매실나무	일괄	5	주	경기도 용*시 기*구 홍덕*로126,홍*마을 힐스테이트@7*9동1*01 호	우*제
			감나무		8	주		

남원시 공고 제2020-519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남 원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남원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청구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 제시 (안 제5조)
- 나.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신설 (안 제6조)
- 다. 청구인 등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등 신설 (안 제7조)
- 라. 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방안 등 신설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4)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

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p> <p>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p>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시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 제7조 (생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남원시 공고 제2020-522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남 원 시 장

1. 개정 이유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남원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남원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청 절차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남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안 제13조)
- 남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 (안 별지 제13호서식)
 - 남원시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안 별지 제14호서식)
 - 남원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안 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4)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남원시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남원시장이 선정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 대리인을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남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남원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	--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남원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남원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4호서식]

남 원 시 남원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제13조제2항 관련)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남원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남원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남원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남원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남원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남원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남원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00과 00계(☎063-62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남원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남원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남원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00과 00계(☎063-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관인생략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0-524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남 원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감면사항의 일몰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8조)

-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4)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2019년 12월 31일 <u>까지</u>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u>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u> <u>----- 2022년 12월 31일</u> <u>까지-----.</u></p>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